
괴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2. 11.



괴산군의회

제 출 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괴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자 최 인 혜



괴산군의회 「위탁 조례 연구회」 참여 의원



의장 신 승 규



대표의원 안 미 선



참여의원 김 주 성



참여의원 김 낙 영

목 차

괴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I 연구 개요	1p.
II 연구 추진 방향	3p.
III 연구의 세부 추진내용	5p.
IV 인력 투입 및 과업 분담 내용	7p.
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9p.
VI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15p.
VII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현황	33p.
VIII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검토	41p.
IX 괴산군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295p.
X 결론	325p.

I

연구 개요

□ **연구명** : 괴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행정의 비효율·비대화를 방지하고 공공
부문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문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행정사무의 위탁 논의가 확산
- 1998년 「지방자치법」에 공공부문 및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집행적 성격의 사무가 다수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구조 조정
차원에서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에 대폭 위탁
- 그러나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합리적 행정 운영에 따
른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위탁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 문제 표출
- 이는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의 대국민 신뢰 추락으로 귀결
-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행정의 근간인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재정
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Quality)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함

□ 연구의 필요성

- 괴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관계조례의 발굴·검토
- 법령과 충돌하는 조례 내지는 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입법의회로서의 기능 강화 및 연구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 나아가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법치 행정 도모

- 법령으로 정한 괴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

➔ 위임·위탁 등의 방법으로 행정 권한의 주체를 바꾸려면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 현재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위탁 중인 사무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검토해 법적근거, 수탁대상기관의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
- 법령과 충돌하는 위탁 관계조례를 전수조사한 후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 정비방안 제시

□ 과업의 수행 기간

- 2022. 09. 19~ 2022. 11. 17.(60일)

Ⅱ

연구 추진 방향

☐ 연구 수행방법

-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발굴
- 위탁 관계조례를 유형별로 추출·검토
- 우선 정비 대상 위탁 관계조례 발굴 후 합리적 정비방안 제시

☐ 연구 수행의 법적 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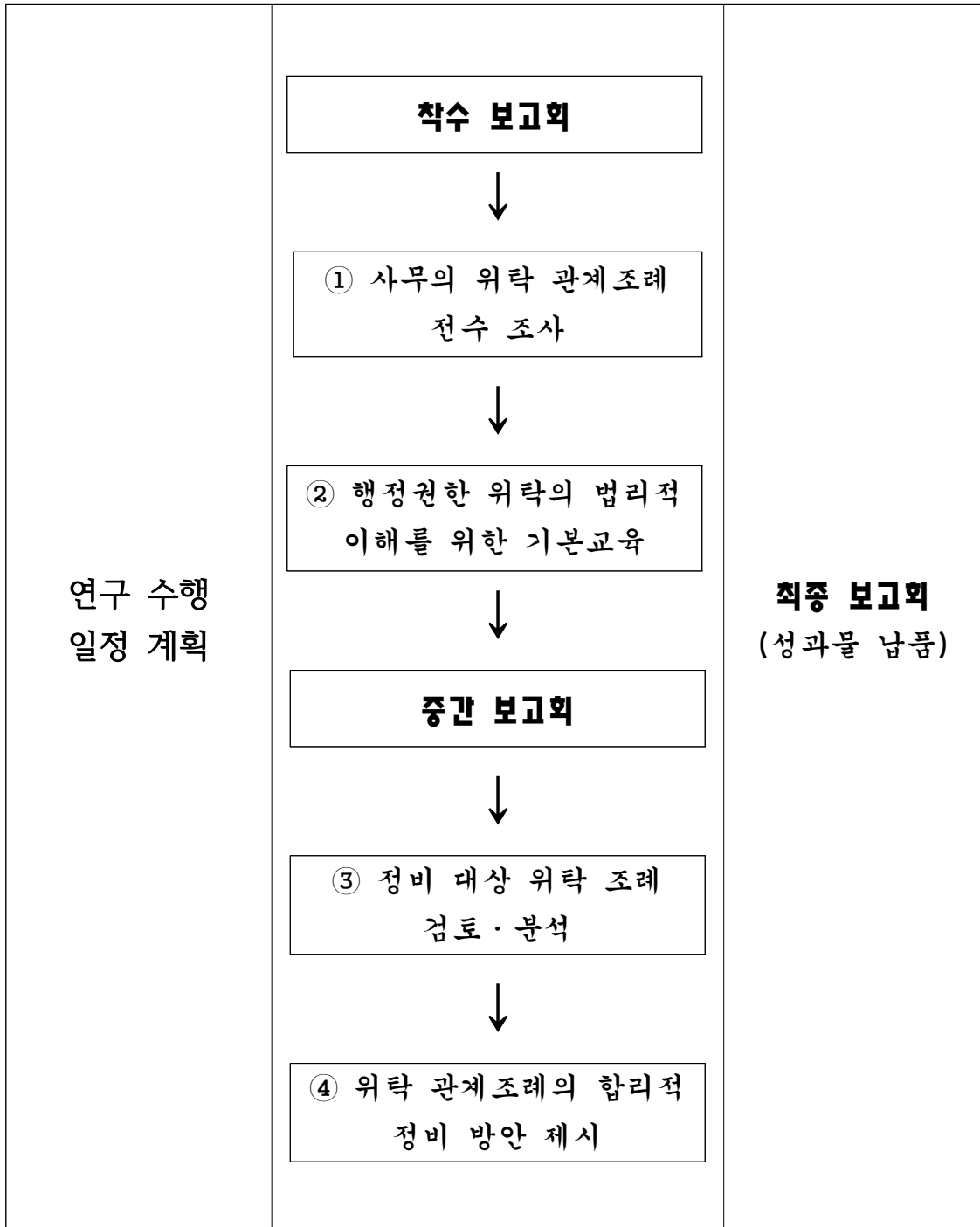
- 법령상 명문의 근거 규정
- 사법부(법원) 판례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 기 타

- 위탁 관계조례(기본조례+개별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 위탁 관계조례가 개별법상 위탁 근거와의 일치 여부
- 위탁 관계조례가 법상 위탁 범위와의 일치 여부

□ 연구 수행 절차도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하고, 단계별로 연구 수행의 일관성 유지 및 법령 적합성·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둠



Ⅲ

연구의 세부 추진내용

□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 현행 위탁 관계조례를 체계적·심층적으로 분석·검토 후 문제점, 미비점 등 보완사항 도출
- 위탁 대상사무의 법적근거 및 법정 수탁기관 적격성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위탁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반드시 제·개정되어야 할 위임 규정의 누락 여부 점검
-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는 권리의 제한 내지는 의무의 부과, 그 밖의 규제사항 여부 점검
-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자격, 계약기간, 그 밖의 조건사항 누락 여부 등 점검

□ 위탁 관계조례 중 발굴·검토 사항

- 위탁 관계조례의 법적근거·법적지위 등 문제점 도출
- 위탁 대상사무의 문제점 및 입법미비 사항 도출
- 위탁 관계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 등을 검토 및 분석하여 법령 불합치 사항 중점 발굴·검토

□ 위탁 관계조례의 입법기술적 측면 검토

- 위법하거나 실효성 없는 위탁 관계조례 규정들을 점검하여 일제정비를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 용어 선택의 적정성 여부
-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기, 누락사항 등 점검

□ 위탁 관계조례 정비방안 제시

- 위탁 관계조례의 재정비 방향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 조례 정비 방안 제시
- 위탁 관계조례의 재정비에 대한 단계별 추진 방향 등 제시

IV 인력 투입 및 과업 분담 내용

■ 연구 인력 및 약력

연구자	책임 구분	현직 및 주요 경력
최인혜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	· (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자문위원(현) ·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현) · 고려대 국제관계학 박사
배석주	[공동연구원] 정비 대상 조례 발굴 · 검토 및 정보 조사 등	· (현) 한국외대 외래교수 · (전) 조순형 국회의원 보좌관 · 한국외대 행정학 박사

■ 과업 분담 내역

직책	성 명	업무 분장 내역
연구책임자	최인혜	· 연구 프로젝트 진행 총괄
공동연구원	배석주	· 정비 대상 조례 발굴 및 검토 · 판례 및 기관 의견 등 취합 · 문헌 정보 조사 등

V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 이해

1.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기능임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조례·규칙에 관한 입법 근거, 입법 한계,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헌법」

제117조 ①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갖는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고유사무’라고도 함)를 처리할 수 있는 외에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위임사무도 함께 수행
-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는 자치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성도 있기에 사무의 배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법」

-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규정
- 주 내용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노력 의무, 조직과 운영, 규모의 합리화·적정성 의무, 법령 또는 상급 자치단체 조례 위반 금지 의무 등

□ 법령 준수 의무는 자치사무가 법령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특히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준수 의무의 경우, 상급 자치단체는 하급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하 자치단체 사이에 늘 그러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러한 지도·감독의 의무는 법령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원칙임

다. 자치사무 확보에 관한 의미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7. 국제교류 및 협력

□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함

□ 위임사무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사무를 말한다. 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뉜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상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임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한 단체위임사무는 위임된 이상 그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자주적 책임 아래 처리되며 취급과 집행에 있어서 고유사무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분류】

구 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고유사무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국가 또는 광역사무로 정하고 “지자체 장”에게 위임
근거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3조1항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법령으로 정한 사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경비 부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보조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사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	전액 국비 보조로써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동책임	국가 책임
법령 규정 형식	법령상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치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법령상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국가 또는 광역단체가 지자체에 위임한다.”라는 규정 “~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규정 외에 법령에 “시·도 또는 시·군·구는 ~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법령에 “○○장관은 ○○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외에 “~을 하려는 자는 ○○○장관의 ○○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 중,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법령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사무 중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국가의 감독	소극적 감독	소극적 감독 (제한적) 적극 감독	소극적 감독 적극적 감독
지방의회의 관여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	사무 수행에 따른 필요 경비 부담 외에는 사무 처리에 관여할 수 없음

VI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의 유형

【행정권한 법정주의(行政權限 法定主義)】

“행정기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그 권한을 변경하는 위임·위탁 시에도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따라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 인바(헌법재판소 2002.10.31. 결정 2001헌라1)
- 행정기관이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할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가능(법제처-의견제시 사례)

1.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개념

- ☐ 사회복지 등 대주민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주민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총액임금제 등의 한계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 이러한 공무원 조직과 정원, 예산 문제 등을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능률성 등을 최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행정사무의 위탁이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이란,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자치사무(고유사무)와, 후단의 (개별)법령으로 정한 위임사무임(단체위임사무)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법인·단체, 기관,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대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개별)법률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다.

-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에 관한 고유사무 중에서 그 일부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의 범위

-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별 예시】

- 조사업무 : 자연환경 조사, 도로교통량 조사, 통계조사 등
- 검사·검정업무 : 특정물질 처리확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체검사
- 관리업무 : 도시공원시설 관리, 도서관·박물관·환경기초시설 등
 1.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 집행 기능
주차장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2.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시험·연구·조사 기능
건설 안전시험, 교량 안전점검, 설계 감리 등
 4.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 관리 기능
조경관리, 통신 장비관리, 관광지·유적지 관리 등
 5. 서비스 제공 기능
방역, 예방접종, 검사업무, 장묘(납골당, 공원묘지)관리, 시험관리 등
 6. 민간이 운영 시,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는 분류상 규제사무 이외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단순사무’ 또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 및 ‘보건의료 인력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등이 위탁의 대상이다.

【법령상 비권력적 사무와 규제사무의 정의】

-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가 대상
- 행정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 등을 요하는 사무나 또는 인·허가 및 단속 업무 등 권력적 행정 및 규제사무 등은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

가. 법령상 민간위탁의 정의(「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위탁

나. 법령상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허가·인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공장허가, 요식업 허가 등)
 - 그 밖에 지방세 징수, 법정 부담금, 주·정차 단속 등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행위 등

2. 공공위탁

가. 공공위탁의 개념

- 공공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에 행정사무를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168조)
-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법인 등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공위탁의 범위

-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정의가 법률에서 명문화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공공단체의 해석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공공단체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 공공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대상기관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제117조제2항),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제168조) 등으로서 법적 신분이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인 관계로 ‘공공위탁’이라 한다.
 -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부 출자·출연 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공공부문의 위탁을 공공위탁으로 지칭하고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_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2015)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정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공공단체」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2009-0362, 10-0019) 또한, ‘그 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하부·소속기관 등을 의미한다(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15-11-10).

- 한편 대법원은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예산 지원 및 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법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지원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체육회, 문화원 등이 공법인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공법인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권한과 책무가 따른다.
- 공공위탁의 수탁대상기관이란 수탁기관 선정·공모에 참여하여 법령·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후 해당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되겠다.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법제처_의견 제시)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관련)

■ 안전번호 : 의견 2017-01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 여부

2.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제2항)과 민간위탁(제3항)을 구별해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5. 6. 9. 의견제시 15-0110 참조), 즉,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대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로 하되, 수임 또는 수탁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대상 사무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되, 수탁자의 범위를 제2항보다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같은 조례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하고 있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조의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서울시장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그 사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별도의 위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관리위탁

가. 관리위탁의 개념

-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 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제 3자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 법상 유사 개념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정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흔히 임대라고도 한다. 주로 식당, 카페, 매점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대상이며, 사용자는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관리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수익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 제22조의 사용료 부과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수립 시 관리방법, 수입·지출비용 등을 산출하여 그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상계의 개념이다.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법」제2조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나. 관리위탁의 범위

☐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행정재산이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며, 수탁기관이 하는 행위의 법적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그에게 귀속된다.

☐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용도로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_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현행 제117조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내지 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다. 행정사무 위탁의 특례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며, 법상 수탁대상기관은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참여가 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주차장, 식당, 매점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의 관리위탁은 해당 시설을 직접 위탁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94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행정안전부_고시)에서 정한 절차·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관리위탁 대상시설 유형별 예시】

1. 비교적 단순 서비스 관리 시설

환승주차장 및 견인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관광지 및 유적지 관리, 장묘시설(납골당, 공원묘지) 관리 등

2.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하수처리장, 재활용시설,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

3.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 등

종합운동장, 수영장, 족구장, 테니스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등

4. 시민 복지서비스 지원·관리가 효율적인 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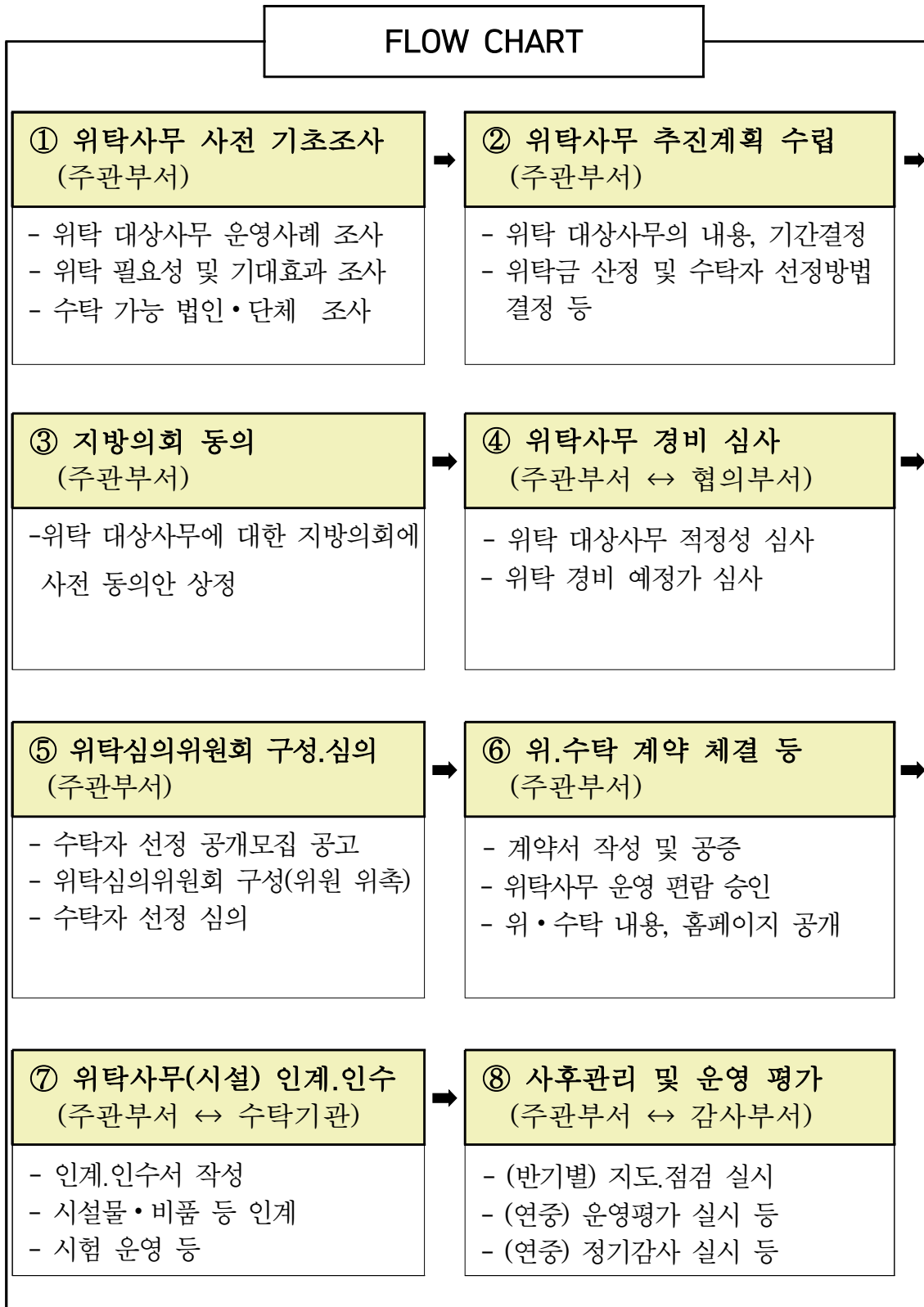
5.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 등 도시철도시설, 산업단지 시설 등

□ 사무의 위탁과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유사 개념	내 용	근거 법령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수행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공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수행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제168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일반재산 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대행	1.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단체장이 대신 권한 행사	「지방자치법」 제124조
	2. 업무 대행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용역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 입장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특정재화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사업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교부	「지방보조금법」

□ 사무의 위탁 절차도



VII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현황

■ 위탁 관계 조례 현황

(2022년 9월 현재)

총 20개부서 -담당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위탁 기본조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1개
	위탁 개별조례	94개
	(합계)	95개

■ 정비 대상 조례 목록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1	괴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
2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3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임	×
4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5	괴산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6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위임	×
7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8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9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자정부법	위임	○
10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지능정보화 기본법	위임	×
11	괴산군 공영장래 지원에 관한 조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임	×
12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임	×
13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노인복지법	위임	○
14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15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16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아이돌봄 지원법	위임	○
17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임	×
18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
19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법	위임	○
20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21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임	×
22	괴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위임	○
23	괴산군 보육 조례	영유아보육법	위임	○
24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	위임	×
25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임	×
26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영유아보육법	위임	○
27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임	○
28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	×
29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	○
30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31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32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용정책기본법	위임	○
33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물환경보전법	위임	○
34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35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임	○
36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37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위임	○
38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39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
40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관광진흥법	위임	○
41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관광진흥법	위임	○
42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법	위임	○
43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44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45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법	위임	×
46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위임	×
47	괴산군 주차장 조례	주차장법	위임	○
48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49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물환경보전법	위임	○
50	괴산군 순환수립장 운영 관리 조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	×
51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
52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	×
53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임	○
54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석면안전관리법	위임	×
55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기물관리법	위임	○
56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정책 기본법	위임	○
57	괴산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임	×
58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59	괴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위임	○
60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어촌정비법	위임	○
61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김치산업 진흥법	위임	○
62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63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	×
64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임	×
65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임	×
66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임	○
67	괴산군 소금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임	×
68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임	×
69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
70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임	○
71	괴산군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내수면어업법	위임	×
72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산림법	위임	×
73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74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위임	○
75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위임	○
76	괴산군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청년기본법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77	괴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임	×
78	괴산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건축법	위임	×
79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	×
80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임	○
81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임	×
82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임	×
83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임	×
84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임	○
85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지방자치법	자치	○
86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위임	×
87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
88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임	○
89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
90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
91	괴산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

연번	위탁 조례	근거 법령	사무 구분	위탁 근거
92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
93	괴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수도법	위임	×
94	괴산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수도법	위임	○
95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수도법	위임	○

VIII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 검토

1. 「괴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괴산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0조(경영진단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31조(경영실적평가·경영진단실시 관련 조례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정비 방안

-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의 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 및 민간부문(수탁기관)에게 맡겨 위탁 계약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아울러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제2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항)

- 한편 특정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등 법령상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데(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13조제1항을 보면 군수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판례 및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함
-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의 실적 평가·연구 조사 등의 사무는 성질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13조제1항 본문 중 위탁은 삭제하고, 전문기관에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제3조(SNS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SNS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2조제1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정의를 보면 SN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매체를 말함. 제3조제2항 각호의 SNS 게재사항을 보면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므로 단지 SNS 게재하는 업무에 불과한 사무를 행정기관의 명의를 대외적으로 변경 처리하는 사무의 위탁으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고, 일반적으로 SNS 게재 업무는 그 성질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4조의 본문 중 위탁은 삭제하고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괴산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창업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각 호 생략)

「괴산군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방안

- 2018. 4. 17. 제26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중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괴산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를 근거로 제정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상위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8조를 보면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6조에서도 청년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이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본문 중 위탁은 삭제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정책연구 업무는 그 성질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8조제2항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군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칭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명칭)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괴산군 통합중간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제6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괴산군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6.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센터의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전담조직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각 호 생략)

다. 정비 방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원 및 관계 기관·부서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는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는 1.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지원, 2.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19. 4. 23. 제27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를 근거로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6조제6호 본문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등의 위임사무가 혼용되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국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괴산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기숙시설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수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다. 정비 방안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지원, 청소년보호와 복지증진 등의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관한 일종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므로 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모순·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을 함께 적용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의 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 및 민간 등 제3자(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이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계약기간동안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가 위탁되면 행정기관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의 대행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되, 그 명의로 책임은 본래의 권한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행정권한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본래의 권한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상위 법령에서 단독의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 및 수탁기관과 또한, 상위 법령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무 및 대행

기관은 별개의 법령으로 규율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행정재산 위탁의 특례 규정으로서 하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대상 자격을 보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위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탁대상기관으로는 복수의 법인·기관·단체가 존재하는데, 이 조례 제4조제1항을 보면 충북학사가 단독의 수의계약자로 학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4조제1항 본문 중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삭제하고 법인·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또는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 원칙)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 운영)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 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정비 방안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2항), 아울러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제3항),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생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데 이 조례 제8조를 보면 후생복지제도의 시행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8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력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 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 정비 방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는 사법인과 공법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이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면 센터를 민간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민간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함
- 일반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의 경우 법령에 그 근거를 뒤야 하는데, 이 조례 제8조제2항 후단을 보면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계약 연장 용어는 삭제함
- 계약의 취소·해지 등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 따르는 것인데, 이 조례 제8조제3항을 보면 계약의 취소·해지 사항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입법 보완함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설치 시에는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사무기구, 간사, 수당, 운영 세칙 등의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경우 입법체계상 조문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정비 방안

- 2022. 1.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조문이 이동되었으므로 조례 제1조의 본문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수정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사무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7조제4항을 보면 수탁대상기관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로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신문·게시판 등에 실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인력, 업무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2.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 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

업

나.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다. 정비 방안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은 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각 호로 정하고 있고, 제78조의3에서는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는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3조 및 제15조를 보면 홈페이지 설치·운영,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유지 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표기하고 있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위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관리·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위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다. 정비 방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11조제4항을 보면 지능정보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11.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괴산군(이하 “군”)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물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이웃사람 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7조제1항 제3호의 민간기관·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 설치)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 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 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다. 정비 방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 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을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사목에서는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9조제1항을 보면 법령상 근거 없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9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방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을 보면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2021. 3. 15. 제29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하여 방문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1인 가구의 정의를 보면 노인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단독으로 취사·취침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등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지원 범위를 벗어났으며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9조를 보면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법령적합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원칙에 따라 현행 조례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함

14.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운영기간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5조(권한위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

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0조제2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근거 조문만 인용한 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미설치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입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0조제3항을 보면 5년 이내로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11조제1항을 보면 노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노인단체는 삭제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서는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조문만 인용한 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미설치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입법 보완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사무의 일부를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6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11조제3항을 보면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일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하여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 자치적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따르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정비 방안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전담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34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제35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한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기구인 전담조직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7조제1항 본문을 보면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군수의 권한 사무를 내부 위임받은 소관부서가 직접 운영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같은 항의 후단을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전담 수행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항 본문 전단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군수(소관부서)가 운영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이는 입법기술상 부적정하므로 제7조제1항 본문 중 후단의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17.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괴산군여성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상담소는 괴산군 주민복지과내에 둔다.

제6조(위탁 경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종교단체인 별인에게 위탁 경영시킬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 2004. 9. 23.] [법률 제7196호, 2004. 3. 22.]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 정비 방안

-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4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됨
-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1968. 4. 18. 부녀자에 대한 생활상담 및 여성의 계몽 지도를 위하여 제정된 이 조례는 상위 법률이 폐지되어 설치 근거가 소멸되었으며, 한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괴산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에서 기능 중이므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8.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3.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4. 소비자보호상담 및 자연환경보호사업
5. 여성취업 및 구인구직 상담
6. 이주여성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7.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사업

제4조(운영관리) ① 여성회관의 재산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을 두되, 주민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감사·보고) ①군수는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관리하게 하였을 때에는 업무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이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제27조),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5조), 이 조례 제4조제1항을 보면 여성회관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원칙에 따라서 이 조례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국한하여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19.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

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2항),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항), 이 조례 제16조 제1항을 보면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서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6조제1항 본문 중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
-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괴산군수가 그 권한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관부서 간의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통일성 있게 처리하고자 제정된 사무 위탁의 기본조례의 성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제18조제1항을 보면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근거가 상위 법령이 아닌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18조제1항의 본문은 위탁에 따른 절차·방법 등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3항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제21조의2제2항 단서를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입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관리)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

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3항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아울러 제21조의2제2항을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11조제3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미설치되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기간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입법 보완함

- 조례 제6조(운영·관리) 및 제11조(위탁 운영)는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내용이 동일하므로 입법체계상 조문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21.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으로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이탈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야 하고(제3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며(제5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6항),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7항), 또한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제8항), 이 조례 제7조제3항을 보면 군수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2. 「괴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위탁계약기간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7조를 보면 위탁기간이 누락되어 있어 입법 보완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제3항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제21조의2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미설치되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입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괴산군 보육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보육 조례」

제14조(위탁 운영) 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나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계약)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 제1호다목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5조는 위탁기간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제24조에 따른 아동 참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나.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을 설립한다.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

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등)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14조를 보면 군수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5.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괴산군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모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 이 조례 제11조를 보면 군수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6.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지도·시설평가사항의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영유아 보호자 대표
4. 보육담당과장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보

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 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정비 방안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심의회·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항 후단을 보면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되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괴산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자문·심의·협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괴산군은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조례가 아닌 훈령(제328호)으로 운용하여 법령과 불일치하므로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 입법이 바람직함

27.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제5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

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나. 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

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22조제1항을 보면 법령상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주어가 누락되어 있어 입법체계상 부적정하므로 조례 제22조제1항에 행정 권한자인 군수를 주어로 표기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제1항), 공유재산심의회는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 이 조례 제22조의2제1항을 보면 시행령 19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행정재산의 최초 위탁에 관한 심의사항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제5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28.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시장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34조(시장관리자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 기능을 하는 시장(“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 점검)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다. 정비 방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또한 법 제20조의2에서는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67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

는 1.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상업기반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위 법령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보면 주차장 및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점검 사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위탁은 삭제하고 지정으로 수정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가 시장관리자를 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34조제1항 후단 중 신청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9.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1.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나.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0조를 보면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10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30.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농산물 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식품산업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 관리) 센터의 운영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2. 신기술 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사업 지원
3. 생산 및 실용화사업 지원
4.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보육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센터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센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 제2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제4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으며(제5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제6항), 일반적으로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행정재산에는 식당, 매점 등 행정재산에서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대상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농산물 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홍보지원 및 식품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주 기능을 보면 1.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공동이용 2.신기술 사업자 지원·육성 3.생산 및 실용화사업 지원 4.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보육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위탁에 따른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수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 권한은 같은 법 제16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사·의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에서는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른 협의회가 관리수탁자를 선정·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7조제1호 및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1.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관리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 시설물”이란 괴산읍 능촌리 1072번지 일원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테마공원, 스트리트몰, 게스트하우스와 그 밖의 시설 및 차량을 말한다.

제4조(운영 관리) 시범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범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3. 시범사업 시설물 이용자의 체험 및 숙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에 운영·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범사업 시설물을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범사업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체험비** 및 **숙박료** 등으로 충당한다. 단, 시범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범사업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5조(협의회 설치) ① 시범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다. 정비 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 제2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제4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으며(제5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

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제6항), 일반적으로 관리위탁 대상 행정재산으로는 식당, 매점, 숙박시설 등 사용료·이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로서 이 조례 제4조 및 제7조를 보면 관리위탁에 관하여 내용상 동일하므로 조문을 통합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되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를 보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리·수선비 및 시설물 설치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고, 아울러 제11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재기제한 것에 불과하여 입법체계상으로 부적정하므로 조례 제11조는 삭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 시설인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심의는 같은 법 제16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사·의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 제19조를 보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구성된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가 관리수탁자 심의·선정 및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선정하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9조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괴산군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제6조(위탁·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무 또는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 직업소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

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다. 정비 방안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직업안정법」 제4조의 2만 표기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인 「고용정책기본법」을 보완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6조제1항 본문을 보면 비영리가 누락되어 있어 수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제2항), 수익계약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령상 공개모집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거나 또는 수익계약에 따른 관리위탁을 불문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 심사·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지 사무실에 불과한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 사무(시설)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 평가·심의를 통한 계약 갱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조례 제6조제2항을 보면 센터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6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3.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괴산군 산업단지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는 법 제48조에 따라 괴산군 산업단지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배출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 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각 호 생략)

나. 근거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

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② 법 제48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2019. 10. 15.>
-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다. 정비 방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30만제곱미터)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구성·체계를 보면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인데, 조례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표기한 것은 근거 법조문을 잘못 인용한 것이므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수정함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이 조례 제3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함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에 관하여는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 조례 제4조를 보면 상위 법령의 규정과 불일치하므로 수정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위·수탁 계약 시에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4.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4조를 보면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35.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및 관리)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 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다. 생산자단체

다. 정비 방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고, 제4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수탁대상기관으로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10조제2항을 보면 비영리법인·단체로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함
- 이 조례 제4조(운영 및 관리) 및 제10조(위탁관리) 제1항을 보면 농업박물관 위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기재되어 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조례 제4조 및 제10조는 조문을 통합함
-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제15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6. 「괴산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은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6조의 단서사항과 제16조제1항 후단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기재되었으므로 조문을 통합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6조제1항을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로만 표기되어 법령과 불일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7.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괴산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근거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다. 정비 방안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가목),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

이 복합된 종합시설(마목)은 문화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0조를 보면 생활문화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일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8.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운사 기념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기념관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판매시설) 군수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념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운영) ① 기념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선정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경우 식당, 판매점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 대상으로서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념관 내에 판매점이 있는 경우 관리위탁 대상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의결 권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 있는 것이므로 이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은 삭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6조제1항의 단서를 보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9.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위탁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경기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 위탁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개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조례 제24조 본문에서 단체의 경우 체육경기단체로 제한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0.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관광지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이하 “관리수탁자”)에게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 관리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 협약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관광진흥법」 제6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 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14조제1항을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1. 「괴산군 관광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관광 진흥 조례」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8. 그밖에 지역축제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나.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관광진흥법」 제6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8조제1항을 보면 관광 관련 법인, 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2.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괴산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책무)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정비 방안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제48조의8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0조를 보면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0조 본문 심화교육의 대행·위탁은 삭제하고,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3.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한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지의 육성·지원과 생산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지체험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한지유물실 및 관련 부대시설
2. 기획전시실 및 관련 부대시설
3. 체험실,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공방, 휴게시설
4. 사무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5.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 주차장, 야외화장실, 야외공원 등
6.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문화예술의 국내외 전시 및 교류사업
2. 한지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한지문화예술 전시, 교육, 출판, 홍보, 축제, 체험, 판매 등에 관한 사업
5.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운영) 박물관은 군수가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험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 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23조제1항을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탁대상기관을 수정하고, 조례 제6조 및 제23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중복 기재한 것이므로 조문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44.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설치된 건축물(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전통 찻집, 특산물판매장, 정자시설, 관리사무소 등), 야영사이트, 주차장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 정비 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도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탁자(수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동안 그의 명의로 사무를 처리하는 제3자를 일컫는데, 이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자로 약칭하면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또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허가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중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조문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5.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주소정보 업무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도로명주소법」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국토지리정보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법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4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각 호 생략)

다. 정비 방안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15조에서 위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6.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정비 방안

- 이 조례의 모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6조를 보면 군수가 이동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도록 함
- 참고로, 2022. 1.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도지사·시장·군수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오는 2023. 7. 19. 시행 예정임

47. 「괴산군 주차장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주차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3.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따른다.

나. 근거 법령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연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관리하되 수탁자의 자격 및 노상주차장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아울러 제13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자격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제1항),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고(제3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제4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으며(제5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반적인 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위탁의 특례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면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법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8.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처리시설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9.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의거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동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① 군수는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의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량 조정을 위하여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 산출부과 및 징수업무는 사리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시설설치비등 산출위탁)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의 산출은 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산출 고지하고 납부케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협의 등)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5. 삭제 <2019. 10. 15.>
-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다. 정비 방안

- 조례 제1조의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18. 1. 18. 일부개정되면서 법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수정함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각 호로 정한 자에게 공공폐

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공동 오·폐수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 산출부와 및 정수업무를 사리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제29조에서는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의 산출은 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산출 고지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0. 「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괴산군순환수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업무 대행 등) ①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서 교부·회수
 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 관리
 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때에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를 설정할 수 있다.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다. 정비 방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수렵장설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16조제1항을 보면 법령상 수렵장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이 아닌 1.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서 교부·회수 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 관리 등을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1.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9조(환경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다. 정비 방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따

른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9조를 보면 군수가 환경교육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9조의 위탁은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2.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충전시설 등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다. 정비 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행정재산으로는 사용료·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인데, 이 조례의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사용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행정재산이 아닌 관계로 관리위탁 대상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조례 제11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탁의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3.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탁 관리 등) ① 괴산군수(이하 “괴산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4.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각 호 생략)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비 방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11조제4항을 보면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11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5.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5조(운영·관리 등) ① 자원순환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광역 소각시설과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운영비 등)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 서류 등을 감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시설의 운영·관리와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다. 정비 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3년 이내로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함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가 관리수탁자 선정·심의 권한이 있는데, 이 조례 제12조를 보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괴산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2조 본문에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완함
-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계약 체결, 지도감독, 위탁 처리 상황 감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11조를 보면 감사·조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재기재하여 입법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11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6.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정비 방안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수탁대상기관을 보면 1.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6조제2항을 보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7. 「괴산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적 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품목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선도기업유치,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교육

제6조(설치)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 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두고 사업비 집행·관리,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조정, 사업 시행주체 발

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

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발전계획에 따라 마련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의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 조례의 모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제45조), 농업·농촌의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9조를 보면 군수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9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조례 17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8.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관리) 소금랜드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소금랜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관리비 등 지원) ①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입장료 등으로 충당한다. 단, 소금랜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소금랜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소금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랜드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금랜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소금랜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금랜드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해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제5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정비 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제1항),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4조(운영 관리) 및 제10조를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4조 및 제10조는 조문을 통합함
-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취소·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조례 제13조는 삭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고(제6항),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7항),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무 위탁의 경우에는 경비(위탁금) 외에 자본형성적 지출을 할 수 없는데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 및 예산편성 운영 지침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6호를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

신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24조(협의회의 기능)에 1.소금랜드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소금랜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소금랜드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2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59. 「괴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제11조(관리비 등 지원) ① 위탁료는 제6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단,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건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제15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나.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각 호로 정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3조를 보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고(제6항),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제7항),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무 위탁의 경우에는 경비(위탁금) 외에 자본형성적 지출을 할 수 없는데, 이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를 보면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 및 예산편성 운영 지침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는 삭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6호를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19조(협의회 기능)를 보면 1.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0.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하 “보금자리 주택”)”이라 함은 괴산군(이하 “군”)이 귀농·귀촌인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제2조제10호가목, 사목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임주자”란 군 또는 수탁운영자와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군수는 보금자리 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법시행령」,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업무의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등 위탁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민간에 관리위탁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전액은 시설운영비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는 시설운영비 부족분 발생 시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건물 수리비 발생 시로 제한한다.

제6조(수탁 운영자의 의무) 수탁 운영자는 위탁받은 보금자리 주택의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13조(유지 및 보수) 군수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멸실한 경우에는 임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주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 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3조제1항을 보면 민간 위탁으로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함
-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재기재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1.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교육 훈련)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김치산업 진흥법」

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정비 방안

「김치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고(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해 적절한 시설·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이 조례 제8조제1항을 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어느 기관·단체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조례 제8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2.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괴산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공동브랜드”)“라 함은 괴산군수(이하 “군수”)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제1호 서식의 상표를 말한다.

제16조(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중사자, 관계공무원 및 품질관리원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농산물과 식품 품질관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상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및 품질관리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16조제4항을 보면 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16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3.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24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2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제28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 전시·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3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모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급식 관련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25조제1항 단서를 보면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4.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제48조·제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제16조·제18조에 의거하여 괴산군 로컬푸드(이하 “괴산푸드”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푸드(Goesan food)”란 생산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괴산군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괴산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제17조(통합센터 설치) ① 군수는 괴산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통합센터 운영) ①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 영양개선) ①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마을을 말한다) 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18조제1항을 보면 군수가 통합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8조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5.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시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특산품”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4. “전시판매장”은 농·특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구매·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시 전시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괴산군 관내 농업 관련 단체 등 비영리 단체
2.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업 관련 단체
3. 기타 지역특산물 생산자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일반인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지원) 전시판매장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등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시설물과 전시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

장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 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에서 군수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제13조(위탁 운영), 제14조(운영 지원),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8조(준용) 본문 중 「괴산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6.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산물 유통센터”란 농·특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구매·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수탁자”)에게 농산물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법인
2. 전문 유통업체나 유통전문가 등

나.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수탁대상기관은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7. 「괴산군 소금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소금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금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금창고 운영에 관한 관리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금창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소금창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군수는 소금창고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17조(관리위탁 등)

제1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19조(수탁자 조직·인원) .

제20조(관리위탁 업무)

제21조(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23조(협약의 해지 등)

제24조(관리위탁 운영비용 등)

나.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모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금창고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7조 및 제17조에는 군수가 소금창고를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6조에서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8.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각 호 생략)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괴산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제5조, 제6조, 제7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나.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구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7조를 보면 군수가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6조의 스마트팜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위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69.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곤충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꿀벌랜드(이하 “꿀벌랜드”)와 곤충산업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는 사리면 모래재로 941 일원에 꿀벌, 곤충 관련 상품판매장·전시체험장·가공시설, 북카페, 야외쉼터, 제조시설, VR체험장, 주변 경관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꿀벌랜드 및 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위탁)

제18조(위탁기간)

제1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1조(보험가입)

제22조(관리비 등 지원)

나.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제3조(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제품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꿀벌·곤충 관련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보면 군수가 꿀벌랜드와 곤충산업거점단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규정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70.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매장”이란 지역 농축산물을 선별·포장·출하·구매·가공·유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 관리)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직매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제12조(보험 가입)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매장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등 선정에 관한 사항

3. 직매장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근거 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박물관·관람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제4조를 보면 군수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4조는 수정하되, 제8조의 사항과 내용상 동일하므로 조문을 통합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사·의결권은 「괴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 그 권한이 있으므로 이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3호는 삭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건물·선박 2.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지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제1항),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에 수탁자로 하여금 상해보험·생명보험 등을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상해보험료·생명보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12조를 보면 군수가 수탁자로 하여금 상해보험·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71. 「괴산군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 2.“내수면 양식”이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제4조(운영 관리) 괴산군수(이하 “군수”)는 내수면 양식단지를 설치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 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모법인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수면 양식단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4조를 보면 군수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4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72.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제정 1965.08.26 조례 제102호, 1990.08.22 조례 제12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유 임야(이하 “군유임야”)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군유임야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군유임야 소재지 인근 리동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대상 임야)

제4조(비용보상)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9조(계약의 해제)

제10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행위를 하지 못한다. <1976. 3. 10 조례 제377호>

나.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 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이용을 위해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정비 방안

- 1960~70년대 황폐화된 산림의 녹화조림을 위하여 1973년부터 시행된 국공유림 위탁관리(분수림 계약) 제도는 산림계의 활동이 유명무실화 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지난 2001년 「산림법」이 폐지가 되면서 「괴산군 군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사문화되었으므로 이 조례는 폐지하도록 함
- 한편, 구「산림법」 폐지 이후 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위임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73.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랜드”란 버섯전시관, 버섯유통센터, 주차장, 야외공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버섯랜드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① 삭제 <삭제 2020.6.26. 조례 제2524호>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버섯랜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버섯랜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랜드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버섯랜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버섯랜드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및 라목에 따른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등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내용을 재기재한 것이므로 조문을 통합함
- 손해배상 책임 등은 「민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이를 중복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특례 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9조는 삭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사·의결권은 「괴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 그 권한이 있으므로 이 조례 제26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74.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치유의 숲 명칭은 성불산 치유의 숲으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산28-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20조(위탁) ① 치유의 숲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의 숲 위탁기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정한다.

나. 근거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각 항 생략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 정비 방안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또는 상위 자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조례 제20조제2항을 보면 치유의 숲 위탁기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입법체계상 부적정하므로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기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75.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단지** : 생태공원, 미션향테마파크,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생태숲학습관, 숲관광메가시티, 한옥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을 통틀어 말한다.

제19조(관리 운영) ① 휴양단지 및 휴양림 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식당 등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수석전시관, 미션향 테마파크 등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지역의 관련 단체(협회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 운영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

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각 항 생략

제10조(자연휴양림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관리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정비 방안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보면 최초의 위탁기간은 최소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9조제5항을 보면 5년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고 최초 위탁 시에 최단기 계약기간이 불명확하므로 최단기 계약기간과 최장기 기간을 병행 표기함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대상기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9조제2항을 보면 매점 및 식당 등은 마을기업·사회적기업·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석 전시관, 미션향 테마파크 등은 지역의 관련 단체·협회를 지정해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수탁대상기관은 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6. 「괴산군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몽도래언덕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몽도래 언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몽도래언덕”이란 괴산읍 동부리 일원에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몽도래 창업센터(괴산읍 동부리 58-157), 몽도래 공연장(괴산읍 동부리 250-1)부지 내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 관리) 몽도래언덕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몽도래언덕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위탁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몽도래언덕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몽도래언덕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몽도래언덕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몽도래언덕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몽도래언덕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몽도래언덕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청년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4조 및 제10조를 보면 군수가 몽도래 언덕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이 조례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
-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르면 주민 복지사업 및 노인·청소년 및 여성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을 근거로 재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77. 「괴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괴산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괴산군민 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전담조직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방식, 인적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정비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보면 군수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78. 「괴산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4. 여성대상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
5.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방안

「건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10조를 보면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79.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괴산군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괴산군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9조의 자전거대여소 및 제20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을 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80.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안전점검 위탁)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보면 시장등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제12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광고물 등의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 제24조 제1항을 보면 도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정계시대를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24조제1항은 삭제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물 등의 교육 위탁에 따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22조제5항 및 제29조제3항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81.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괴산군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8조(위임·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사용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8조를 보면 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8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82.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0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 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해서는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요원 및 현장점검반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11조 및 제22조를 보면 군수가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고, 소방학교·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교육·훈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3.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4.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개선의 위탁 및 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업무 및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요원 및 현장점검반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군수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삭제하고, 교육훈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4.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 근거 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특별시장등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조례 제11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5.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위탁)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회관 위탁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업무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

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아울러 같은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13조를 보면 군수가 회관을 민간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6.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괴산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예방 사업)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5조제2항을 보면 군수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5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87.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 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 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7조제3항을 보면 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7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88.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괴산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괴산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괴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시행일: 2022. 12. 11.], 이 조례 제7조제2항을 보면 군수가 자살통계의 수집·분석·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7조제2항의 위탁은 삭제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 예방 센터의 설치·운영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9조제2항을 보면 민간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9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도록 근거 조문을 인용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탁자 선정 시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미설치되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문을 신설하여 자살예방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89.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괴산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운영) ②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위탁 등)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법 제 15조제6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 및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나.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3조 및 제13조를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제3조 및 제13조는 조문을 통합함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제28조 및 제29조),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상위 법령 및 상급기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 제19조 전단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제13조 제4항을 재기재한 것이므로 조례 제19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90.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제4조 및 제24조에 의한 농업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등 농촌공동체 회복을 통한 활력 넘치는 괴산군을 만들고자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육성지원 및 사업 추진) ③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5호의 일부 사업을 귀농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귀농인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11조(귀농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구로서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나. 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가 귀농·귀촌인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 제10조제3항을 보면 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0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91. 「괴산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괴산군 서울농장은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69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농장”이란 교육동, 숙소동, 주차장, 실습농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 관리) 서울농장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정비 방안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가 귀농·귀촌인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4조 및 제7조를 보면 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이 조례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92.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교육의 장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8조(관리 주체)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 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 정비 방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9조를 보면 군수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9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93. 「괴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도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한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리·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10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 시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 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근거 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의 설치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포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

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⑤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정비 방안

「수도법」 제71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10조제1항을 보면 공사의 설계·시공은 군수가 시행하되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제10조제1항 단서 중 위탁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94. 「괴산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서 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위해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정도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근거 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시장·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 기능·운영) ①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정비 방안

- 「수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5. 상하수도 분야·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모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제22조를 보면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함

- 「수도법」 제23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제5항),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는 심의위원회가 미설치되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문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95.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가. 조례 규정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괴산군 수도 급수 공사 대행규칙」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문서로 착공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나. 근거 법령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공급 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해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 기능·운영) ①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정비 방안

○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 수돗물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9조제1항을 보면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하되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 중 위탁은 삭제함

○ 「수도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

단 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5. 상하수도 분야·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모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조례 제45조를 보면 계량기 점검,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수정함

- 「수도법」 제23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는 심의위원회가 미설치되어 법령과 불합치하므로 조문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IX 괴산군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가.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안)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괴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경우 괴산군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 간에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나. 근거 법률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17조제2항·제3항, 제168조

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하여 괴산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조례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기관에게 맡겨 위탁기관의 명의로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u><신설></u>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기관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u><신설></u>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u><신설></u>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삭제”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괴산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좌동” “좌동” “좌동” “제2항은 (안)제5조로 이동” “제2항은 (안)제7조로 이동” “삭제” (위탁 경비 지원 근거는 개별 운영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u>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u>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u><신설></u>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제6조(위탁 계획)</u> ① 군수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제7조(의회 동의)</u>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전에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신설></u>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u>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u>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신설> <신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u>제7조의2(위탁 동의안)</u>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9.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u>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u>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좌동”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항은 (안)제9조로 이동”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제3항은 (안)제9조로 이동”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8조에 따른 위탁사무 감사 결과, 제29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설치)</u>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심의 2.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 신청 심의
<u><신설></u>	“제2항 삭제”
	<u>제11조(위원회의 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공인원가분석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u><신설></u>	상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위탁사무 분야 10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신설></u>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신설></u>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u>제15조(수당 등)</u>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u>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오랫동안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u><신설></u>	
<u><신설></u>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u><신설></u>	<u>고 인정될 경우</u> <u>6. 위원이 제1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u>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u> <u>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인 경우</u> <u>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경우</u> <u>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u> <u>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u>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② 심사·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외한다. <u>제18조(의견 청취 등)</u>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u>제19조(비밀 준수)</u>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u><신설></u>	
<u><신설></u>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u><신설></u> <u>제7조(협약 체결 등) ①</u>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②</u> 협약서에는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제2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u> <u>①</u>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u>②</u> 군수는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제21조(계약 체결) ①</u>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1. 위탁의 목적</u> <u>2. 수탁기관의 명칭·주소</u> <u>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u> <u>4. 위탁 계약기간</u> <u>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u> <u>6. 수탁기관의 의무</u> <u>7. 계약의 취소·해지 사유</u> <u>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u> <u>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군수가</u>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u><신설></u> <u>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u> <u>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u><신설></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군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계약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u> “삭제” <u>제22조(위탁 계약기간) ①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 <u>제23조(재계약)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u> <u>②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u>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신설>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5조(이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이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신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위탁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성과 평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자료의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u><신설></u>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군수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3. 수탁기관이 군수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현행	개정 시안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탁 경비 및 물품 등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제3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안)」 전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괴산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군수는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전에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2(위탁 동의안)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9.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8조에 따른 위탁사무 감사 결과, 제29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심의
2.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 신청 심의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공인원가분석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위탁사무 분야 10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에게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오랫동안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7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심사·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외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 체결)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 계약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취소·해지 사유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계약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 계약기간) ①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계약)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5조(이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이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위탁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성과 평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자료의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군수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3. 수탁기관이 군수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군수가 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탁 경비 및 물품 등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개관

-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책결정, 집행부 통제·감시, 집행부에 대한 심사 평가기관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견인차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 입법의 정비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함
- 특히, 법령에 위배되거나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의 재정비야말로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고유 기능이자 책무임

2. 위탁 관계조례의 입법 보완

- 현행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를 분석·검토하여 상위 법령의 불합치, 규정의 모호성·불명확성, 이 외에도 조례입법 미비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입법 보완 방안 마련
- 2022년 10월 현재 괴산군 위탁 관계조례는 총 95개이며, 이를 심층적으로 이를 분석·검토한 결과 다수의 위탁 관계조례에서 상위 법령과 불합치 하는 등의 문제가 도출
- 위탁 관계조례들을 보면 상위 법령상 위탁의 근거가 없거나 또는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공정성·투명성 등이 결여되는 사항, 위탁사무의 선정단계에서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거나 불확실하는 등 위법·부당성이 상시적으로 존재
- 따라서 위탁 관계조례의 재정비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재정비하여 법치행정·적극행정 도모

3. 위탁 관계조례의 문제점(총괄)

(1) 괴산군 사무 위탁의 통합 기본조례 필요

가. 문제점

- ☐ 괴산군은 위탁 관계조례 검토 결과 다수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서 법인·단체, 개인에게만 사무를 위탁하는 실정임(민간부문에만 사무를 위탁)
-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괴산군은 법령과 달리 조례로 정하여 민간에만 위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다분

나. 대안

현행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대상기관을 민간부문 외에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기본조례로 재정비해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2) 괴산군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안) 제정 필요

가. 문제점

- ☐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_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될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 ☐ 다수의 위탁 관계조례를 보면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을 배제한 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괴

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부문에만 위탁을 하는 등 괴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위탁에 따른 상위 법령을 오해 내지는 오인하여 법령과 불합치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나. 대안

사무의 위탁에 있어 행정재산이 혼용된 경우 특례 규정이라 할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위임조례인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보완하거나 또는 가칭 「괴산군 행정 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통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문제점 및 정비방안」		
구 분	문 제 점	정비방안
1. 공공위탁 조례 미제정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제16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괴산군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면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사무 위탁을 규율할 수 있는 기본조례는 미제정 □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위 공공부문 수탁기관의 위탁 참여를 제한함 □ 공공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미제정으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사무 및 절차상 하자 발생,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의결권·동의권) 침해 우려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공공위탁 근거 명문화 ↓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통합하는 기본조례로 운용
2.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화	□ 사무의 위탁 시, 행정재산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행정재산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등 법령과 불합치 □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이 주목적이므로, 단순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적용 불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 제정·검토

4. 기타

- ◎ 사무 위탁 제도의 개념 정의 및 이해 부족
 - ➔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위탁 등 용어의 혼용으로 절차상 하자가 우려되므로 법정 위탁의 개념 구분 필요
 - ➔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 사무의 혼용으로 개념 구분이 필요
- ◎ 사무 위탁의 구분과 관련해 관계법규의 체계적 연구 및 위탁사무의 매뉴얼 부재로 법령과 불합치
 - ➔ 사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전문성 확보 및 위탁사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위탁사무 매뉴얼 제작·보급 필요
- ◎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을 간과한 임의 위탁 남발
 - ➔ 사무의 위탁 시 상위 법령의 근거를 간과한 채 조례로 임의로 위탁하는 등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 교육 필요
 - ➔ 사무의 위탁에 따른 법리 이해를 도우기 위한 전문가 상시 교육 필요
- ◎ 사무의 위탁 시 민간부문에만 적용해 국민의 권리 제한
 - ➔ 사무의 위탁 시 민간만 위탁하고 공공부문은 배제하는 등 법령 불합치

【지방자치단체 위탁의 기본법적 근거】

법령 구분	법정 수탁대상기관	근거 조문	조례
「지방자치법」	.공공위탁 → 공공단체·공공기관	제117조제2항	「민간위탁 조례」
	→ 지방자치단체	제168조	
	.민간위탁 → 법인, 단체·기관, 개인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법」	.행정재산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제27조제1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반재산 위탁관리 → 특별법상 법인	제43조의2	

□ 사무 위탁의 제도개선 사항 요약

구분	현행	개선안
위탁 대상사무의 성질 구분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리위탁·위탁관리 혼용	법정 위탁 개념 구분 필요
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기준	위탁과 대행, 용역 등 유사사무 혼용	유사 개념과의 구분 필요
위탁 시 적정성 판단 기준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 등 구체적 판단 기준 모호	명확한 적정성 판단 기준 제시
위탁사무의 법적근거 제시	사무 위탁 시 준용 근거 미흡	위탁사무의 상위 법령 및 관계조례 근거 명확화
자치사무만 위탁 동의	사무 위탁 시 자치사무만 의회 동의를 받고 단체위임사무는 모두 배제	위탁의 법률상 효력은 고유사무·위임사무 모두 동일하므로 공통적으로 적용
심의 위원회 적용 근거	사무 위탁 시 「민간위탁 조례」의 심의위원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해 법정 위원회가 배제	법정위원회 및 임의위원회의 개념 정립 및 근거 제시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재계약(수의계약) 시 위원회 사전 평가·심의	재계약 (수의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 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모호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평가에 따른 자격(법적 지위·신분) 명확화
민간위탁 조례만 적용하여 공공부문은 모두 배제	사무 위탁 시 조례에 민간의 법인·단체, 개인만 적용하고 공공부문은 배제되어 법령 위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하는 사무 위탁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법령 적합성 유지
행정재산의 위탁 조례 미제정·입법 미비	행정재산·일반재산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조례와 매뉴얼 미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위탁에 따른 조례 재정비로 위탁사무의 합법성 도모